

# KCGS Report

제15권 11호 | 통권 제191호  
2025. 11.



한국ESG기준원

---

## KCGS Report 제15권 11호

발행일 : 2025년 11월 28일

발행인 : 이 정의

발행처 : 한국ESG기준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TEL: 02-3775-3339 [www.cgs.or.kr](http://www.cgs.or.kr)

제작 : 경성문화사 02-786-2999

등록NO : 영등포, 라00532

---

※ 이 보고서의 견해 및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ESG기준원에 귀속되며,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상기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해당 보고서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표시 바랍니다.

# KCGS Report

제15권 11호 | 2025. 11.

## ● ESG 동향

- 국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 공시 현황 : 자본재 산업을 중심으로 2
- AI 기반 ESG 인식 분석 :  
환경보호·사회공헌 중심 오해의 현황과 함의 12
- 국내 금융회사 이사회 의 연차 구성 현황 20

## ● Global News

1. 영국, ESG 등급 제공자 규제안 발표 27
2. EU(유럽연합),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 합의 29

# 국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 공시 현황 : 자본재 산업을 중심으로

박수빈\*

- ▶ 최근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재해조사보고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안전보건 정보 공개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됨
- ▶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안전보건 정보 공시 동향을 살펴보는 한편 이를 토대로 국내 기업의 정보 공개 현황을 조사함
- ▶ 조사 결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산업재해 현황 등 자사 기준의 안전보건 정보는 비교적 충실히 공시하고 있으나 협력업체 위험관리 체계 등 공급망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에 관한 정보 공개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 ▶ 국내외 안전보건 정보 공시 의무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은 공급망 안전보건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 안전보건 정보 공시 관련 국내외 동향

- 국내 안전보건 정보 공시 현황
  - 지난 9월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목표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안전보건 정보 공개 확대를 제시함
  - 세부 과제로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및 공개 의무 신설,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안전 주체로서 기업의 책무를 확립하고자 함
    -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및 공개 의무 :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 발생 경위, 원인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안전보건공시제 :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전보건 관련 투자 규모, 재해 현황, 재발방지 대책 등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 현행 법령상 안전보건 관련 정보의 작성 및 공개 의무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재해조사보고서 관련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추진 중임
  - 실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보와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기업의

---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ESG평가본부 사회파트 박수빈 선임연구원, moana@cgs.or.kr

책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해외 안전보건 정보 공시 현황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산업재해 추적 시스템(Injury Tracking Application, 이하 ITA)
  - 미국의 산업재해 추적 시스템은 기업이 매년 산업재해 관련 요약 보고서를 OSHA에 제출하고, OSHA가 데이터베이스로 형태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제출 대상은 사업장 규모, 업종에 따라 결정되며 2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거나 OSHA에서 별도로 정한 특정 산업<sup>1)</sup>이 포함됨
  - 보고서의 주요 항목에는 연간 사망자 수, 근로 손실이 발생한 사고 건수, 직무 전환 또는 제한 근로 건수, 질병 유형별 건수 등이 있음
  - 2024년부터는 연간 요약 보고서 외에도 고위험군 산업<sup>2)</sup>을 대상으로 재해 발생 시 7일 이내에 재해 원인, 경위, 치료 정보 등을 담은 사건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유럽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
  - 유럽연합은 ESRS를 통해 안전보건 관련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ESRS S1(자사 근로자), S2(가치사슬 근로자) 기준에서 안전보건 관련 항목과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S1(자사 근로자), S2(가치사슬 근로자) 모두 공통적으로 전략(Strategy), 영향·위험·기회 관리(Impacts, Risks & Opportunities Management), 지표 및 목표(Metrics & Targets) 등 3개 공시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업은 자사 근로자 또는 가치사슬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중대한 영향이 존재할 경우, 위의 공시 프레임워크에 따라 안전보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 위험관리 프로세스 및 활동(정책, 예방체계, 구체조치 등), 목표·지표를 공시하여야 함
  - 특히, S1(자사 근로자)에서는 구체적 지표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 재해율, 근로손실일수 등이 포함되며, 사망자 수의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자 수도 별도 공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일본
  - 일본은 2023년부터 유가증권보고서 내 인적자본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인적자본의 범위에 안전보건, 직원 교육, 다양성 등이 포함됨
  - 다만, 미국, 유럽과 달리 구체적 항목이나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기업이 특정 주제에 대한 정책, 지표·목표, 성과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형태를 취함

1) 직원 20~249 규모의 사업장 중 OSHA가 고위험 산업군으로 별도로 정한 산업으로 건설업, 제조업, 운송업 등이 해당함

2)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 중 OSHA가 고위험 및 데이터 필요성이 높은 산업으로 지정한 산업으로써 자동차, 철강, 건축, 토목 등이 포함되며 요약보고서 적용 산업보다 세분화된 업종을 대상으로 함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 특정 국가나 정부 중심의 안전보건 공시 기준은 아니나 GRI는 지속가능성 관련 비재무정보 공시 기준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준임. 이에 따라 GRI의 안전보건 관련 공시 항목도 함께 검토함
  - GRI는 GRI 2(일반 공시)와 GRI 3(중요 주제)로 구분되고, 중요 주제 중 하나로 GRI 403(산업안전보건)을 다루고 있음
  - GRI 403(산업안전보건)은 기업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중대한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과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 방법에 대한 대표적 공시 항목에는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위험 요인 식별 및 평가 프로세스, 근로자 참여·소통 프로그램, 공급망에서 파생되는 안전보건 영향 및 조치 내역 등이 포함됨
  - 또한 영향 및 결과에 대한 공시 항목에는 업무 관련 상해로 인한 사망자 수, 질병자 수 등 정량적 정보가 포함되며, 이때 자사 근로자 외에도 조직이 업무 또는 작업자를 통제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시사점
  - 국내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안전보건 관련 정보 공시의 의무화가 강화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위험관리 프로세스, 산업재해 관련 정량 지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음
  - 특히, 국내 도입 예정인 재해조사보고서 제도와 미국 OSHA의 ITA는 산업재해 발생 시 단순 통계 이상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 즉, 재해의 원인, 경과, 조치 내역 등 사고의 맥락과 대응 과정까지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역량을 외부에 투명하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이러한 흐름은 안전보건 정보 공개가 단순 운영 현황 보고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영·리스크 관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정보 공개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공시제도의 흐름을 토대로 국내 기업 중에서도 중대재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업이 포함된 자본재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안전보건 정보 공시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국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 공시 현황

- 조사 개요
  - (조사목적) 국내외 안전보건 관련 정보 강화 요구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 공시 수준 분석 및 향후 개선 방향 모색
  - (조사대상) 2025년 KCGS 사회평가 대상기업 중 자본재 업종<sup>3)</sup> 141개사

- (조사내용) 주요 공시 채널(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련 주요 공시 항목의 공개 현황 및 수준을 조사함

〈표 1〉 세부 분석 항목

구분	주요 내용	관련 기준
안전보건 관리체계	-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리체계 수립 여부	ESRS S1, GRI 403-1
안전보건 위험관리 프로세스	- 원청의 안전보건 위험관리 프로세스 구축 및 운영 실적 - 협력업체 안전보건 위험관리 프로세스 구축 및 운영 실적	ESRS S1, GRI 403-2, 7
안전보건 지표	- 원청,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자 수, 사망률 등 산업재해 현황 지표	ESRS S1, GRI 403-9, ITA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체계	-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관련 소통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현황 - 협력업체 대상 안전보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ESRS S2, GRI 403-4

#### □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개 현황

-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국내외 공시 기준마다 그 정의가 다소 상이하나 ESRS, GRI 등 가이드라인에서는 안전보건 관련 경영방침, 목표, 위험관리 프로세스 등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이를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해당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는지 그 수준에 따라 개괄적 수준, 구체적 수준으로 유형을 나누고 유형별 공개 현황을 조사함
  - 개괄적 수준 : 안전보건 관련 기업의 방향성, 의지를 담은 경영방침을 수립, 공개하고 있는지 조사
  - 구체적 수준 :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함께 안전보건 관련 목표, 위험관리 프로세스 등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관리체계를 수립, 공개하고 있는지 조사
- 조사 결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공개한 기업은 총 119개사(84.4%)로 자본재 업종 대부분이 안전보건 이슈에 대한 기업의 방향성, 의지를 담은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한 것으로 확인됨
- 반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비롯하여 목표, 위험관리 프로세스 등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관리체계를 공개한 기업은 42개사(29.8%)로 그쳐 구체적 수준의 공개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3) wics 산업 분류상 자본재 업종에 해당하며 대표적으로 건축자재, 건설업, 기계, 조선업 등이 포함됨

〈표 2〉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개 현황

(단위 : 개사, %)

구분	기업 수	비율
미공개	22	15.6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개	119	84.4
- 개발적 수준 공개	77	54.6
- 구체적 수준 공개	42	29.8
합계	141	100.0

□ 안전보건 위험관리 프로세스 공개 현황

- 앞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개 현황에서 기업이 관리체계 내에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위험관리 프로세스 공개 현황에서는 위험 식별·평가·조치에 이르는 구체적인 절차와 운영 실적의 공개 수준을 조사함
- 구체적으로 원청과 협력업체를 구분하여, 각 대상별로 안전보건 관련 중대한 영향을 식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나아가 식별한 위험을 예방·개선·완화하기 위한 조치 실적을 공개하고 있는지 조사함
  - 원청 위험관리 프로세스 : 조사 대상기업이 안전보건 관련 중대한 위험을 식별하는 평가 절차와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지 조사
  - 협력업체 위험관리 프로세스 : 조사 대상기업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와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지 조사
- 안전보건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공개한 기업은 원청 기준 57개사(40.4%), 협력업체 기준 52개사(36.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위험 식별 결과에 따른 구체적 조치 실적까지 공개한 기업은 원청 기준 24개사(17.0%), 협력업체 기준 22개사(15.6%)에 불과하여, 위험 식별 단계 대비 조치·개선 단계의 공개 수준이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됨
- 국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 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어 일부 기업이 형식적으로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구축·공개하고 있으나, 위험 식별 결과에 따른 조치나 개선 실적 등 실질적 이행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표 3〉 안전보건 위험관리 프로세스 공개 현황

(단위 : 개사, %)

구분	원청 위험관리 프로세스		협력업체 위험관리 프로세스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미공개	84	59.6	89	63.1
위험관리 프로세스 공개	57	40.4	52	36.9
- 위험 식별 절차 및 방법 공개	33	23.4	30	21.3
- 위험 식별 결과에 따른 조치 실적 공개	24	17.0	22	15.6
합계	141	100.0	141	100.0

#### □ 안전보건 지표 공개 현황

- 안전보건 관련 정량 지표에는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재해자 수, 사망자 수, 산업재해율 등이 주요 지표로 활용됨. 다만, 가이드라인마다 공시 항목이 상이하며, 기업 특성에 따라 공개 지표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지표의 유형은 구분하지 않고,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안전보건 지표 공개 현황을 조사함
- 조사 결과, 원청 기준 안전보건 지표를 공개한 기업은 119개사(84.4%)로 대부분 기업이 자사의 산업재해 현황을 측정 및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안전보건 공시 주요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공개율을 보임
- 반면, 협력업체 기준 안전보건 지표를 공개한 기업은 42개사(29.8%)로 원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협력업체 산업재해에 대한 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 안전보건 지표의 경우 앞서 위험성 평가와 달리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ESG 공시 기준(GRI 403, ESRS S1 등)을 중심으로 관련 지표 공개가 확산되고 있어 기업의 공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다만,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표의 공개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여 공급망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을 시사함

〈표 4〉 안전보건 지표 공개 현황

(단위 : 개사, %)

구분	원청 안전보건 지표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표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미공개	22	15.6	99	70.2
안전보건 지표 공개	119	84.4	42	29.8
합계	141	100.0	141	100.0

#### □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체계 공개 현황

- ESRS, GRI 등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사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노력 외에도 협력업체 등 자사의 운영·제품·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중대한 안전보건 영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조치로서 근로자 소통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들고 있음
- 앞선 조사 결과, 협력업체 대상 위험관리 프로세스, 산업재해 현황에 대한 관리 및 정보 공개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공급망 안전보건 관리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체계 중에서도 근로자 소통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공개 여부를 조사함
  - 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소통 및 참여 프로그램 : 안전보건협의체, 안전신문고 등 안전보건 관련 협력업체 근로자의 참여, 소통이 가능한 채널의 구축 여부를 조사

- 안전보건 역량 강화 프로그램 :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자금지원, 교육 등)의 구축 여부를 조사
- 조사 결과, 협력업체 대상 안전보건 의견수렴 채널을 공개한 기업은 총 52개사(36.9%), 안전보건 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한 기업은 총 48개사(34.0%)였으며,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공개가 활발하지 않음을 재확인함

〈표 5〉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체계 공개 현황

(단위 : 개사, %)

구분	근로자 소통 및 참여 프로그램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미공개	89	63.1	93	66.0
프로그램 공개	52	36.9	48	34.0
합계	141	100.0	141	100.0

## 결론 및 제언

### □ 조사 결과

- 국내 자본재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공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전보건 지표 등 자사 중심의 정보는 비교적 충실히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자사 중심의 안전보건 정보 중에서도 구체적 수준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따른 조치 결과 등 운영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정보는 공개 수준이 높지 않아 실질적 이행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협력업체 대상 위험관리 프로세스, 지원체계 등 공급망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현황을 공개한 기업이 전체의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국내 기업이 안전보건 위험관리 체계를 일정 부분 구축하였으나 협력업체를 비롯한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여전히 미흡함을 시사함
- 따라서 향후 안전보건 정보 공시는 단순한 지표 공개를 넘어, 위험 식별-조치-성과 공유의 전 과정을 다루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 □ 제언

- 국내외 안전보건 관련 정보의 공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실적과 성과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정보 공개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주요 기업에서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안전보건 관련 정량 지표를 측정하고, 이를

-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로는 글로벌 석유회사인 Shell을 들 수 있음
- Shell은 매년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통해 자사와 협력업체 근로자 관련 안전보건 지표를 공개하고 있음<sup>4)</sup>
- 사망자 수 외에도 업무 관련 중증 상해자 수, 근로손실재해율 등 다양한 지표를 시계열로 공개하고 각 지표의 산출 방식까지 공개하여 안전보건 관리 현황을 비교, 추적이 용이하도록 함
- 또한, 산업재해 현황의 경우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사고의 경위, 원인 등을 함께 공개함으로써 위험관리 체계와 개선 활동의 구체적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있음

〈그림 1〉 Shell 산업재해 현황 공개 사례

Shell plc Sustainability Data Supplement 2024 <span style="float: right;">Back to Index</span>						
Personal safety and health (operational control)						
	Unit	2024	2023	2022	2021	2020
<b>Personal safety</b>						
Fatalities	number	2	5	2	8	—
Employees	number	—	—	—	—	—
Contractors	number	2	5	2	8	—
Fatal accident rate	number per 100	0.4	1.1	0.4	1.7	—
Employees	number per 100	—	—	—	—	—
Contractors	number per 100	0.7	1.9	0.7	2.9	—
Serious injury, illness and fatality (SIF)	number	7	12	9	32	23
Employees	number	1	2	—	5	5
Contractors	number	6	10	9	27	18
Serious injury, illness and fatality frequency (SIF-F)	number per 100	1.5	2.6	2.0	6.9	6.0
Employees	number per 100	0.5	1.0	—	2.7	2.7
Contractors	number per 100	2.2	3.7	3.1	9.8	6.8
Total Recordable Cases (TRC)	number	501	539	444	401	311
Total recordable case frequency (TRCF)	number per million	1.1	1.1	1.0	0.9	0.7
Employees	number per million	1.0	1.1	0.8	0.5	0.4
Contractors	number per million	1.1	1.1	1.1	1.1	0.9
Lost time injury frequency (LTIF)	number per million	0.5	0.5	0.4	0.3	0.2
Employees	number per million	0.5	0.6	0.4	0.3	0.2
Contractors	number per million	0.4	0.4	0.4	0.4	0.3
<b>Health</b>						
Cases of recordable work-related ill health	number	262				
Total recordable occupational illness frequency (TROIF)	number per million	0.6				

\* Data for 2024 is published in Shell's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4.  
 [A] In line with industry practice, we distinguish three contract modes. Mode 1: Shell has control of the workplace or work activity; Mode 2: Shell and the contractor control their own workplace, but these workplaces can have a potential impact on each other which requires management of interfaces; Mode 3: Contractor or another external party controls the workplace and the contractor controls the work activity. In accordance with industry practice, we report on personal safety performance for Mode 1 and Mode 2.  
 [B] Total deaths resulting from a work-related injury or occupational illness. Includes fatalities still under review that are probable to be confirmed as work related. Excludes  
 [C] Serious work-related injury or illness, including those resulting in fatality or a permanent impairment (defined as both an inability to return to the previous work role and inability  
 [D] Total injuries resulting in a fatality, lost workday case, restricted work case or medical treatment case.  
 [E] Injuries resulting in a fatality or lost workday case.  
 [F] Total occupational illnesses identified and meeting the criteria for being record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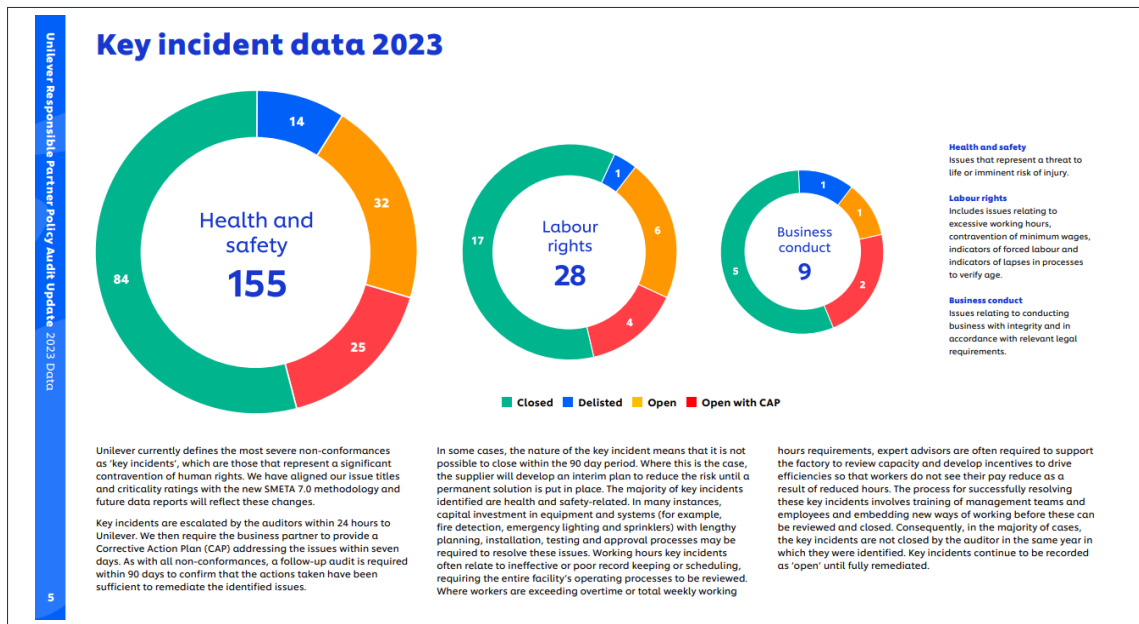
출처 : Shell, Annual Sustainability Data Supplement 2024

-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를 공개한 사례로는 독일의 산업재 기업인 지멘스(Siemens)와 다국적 소비재 기업인 유니레버(Unilever)를 들 수 있음
- 지멘스가 2024년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공급망 실사 결과 안전보건 관련 위험이 식별된 협력업체의 수와 위험 관련 개선 조치가 합의된 기업의 수를 공개하고 있음<sup>5)</sup>
- 유니레버는 2023년 별도의 실사 보고서(Responsible Partner Policy Audit Update)를

4) Shell, 2024, "Annual Sustainability Data Supplement", <https://www.shell.com/investors/results-and-reporting/annual-report.html>  
 5) Siemens, 2024, "Sustainability Report 2024", <https://www.siemens.com/global/en/company/sustainability/reports-figures.html>

통해 실사에서 식별한 안전보건 관련 중대 사건의 수를 공개하는 한편, 조치완료·거래 종료·진행 중 등 단계별 조치 실적과 실제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소요된 평균 시간까지도 공개함.<sup>6)</sup> 또한 주요 부적합 사항의 구체적 내용도 함께 공개하여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그림 2〉 유니레버의 협력업체 위험관리 공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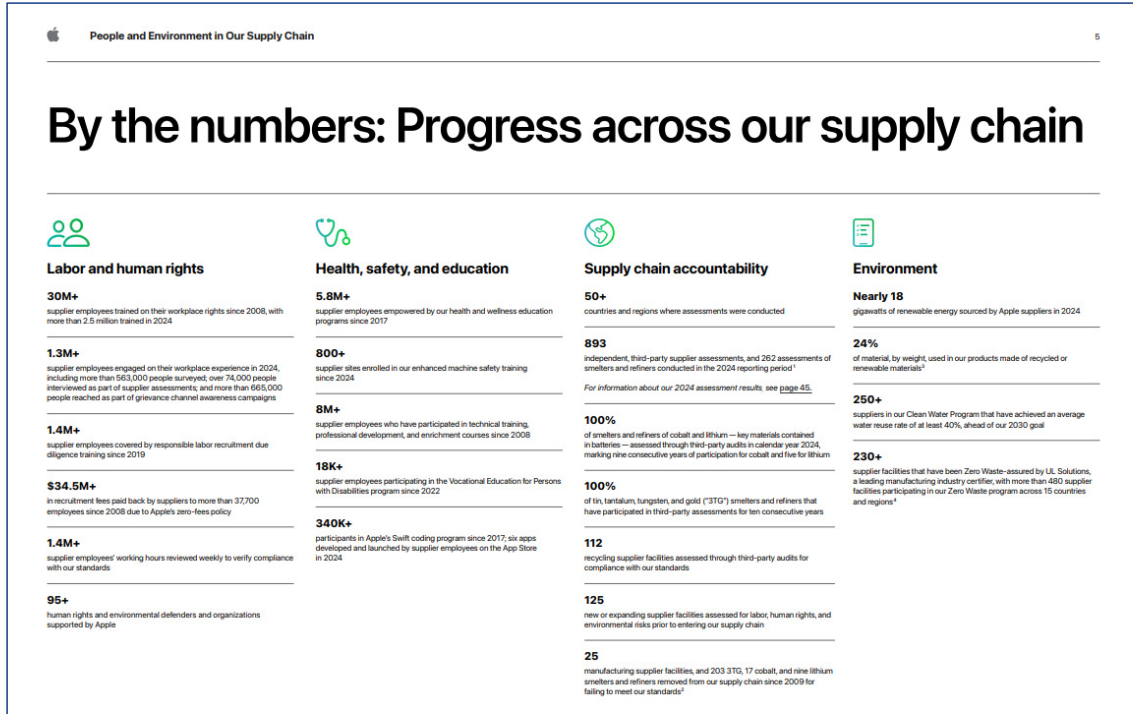
출처 : Unilever, Responsible Partner Policy Audit Update 2023

-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체계 관련 정보의 경우, 국내외 기업 모두 타 항목에 비해 정보 공개가 활발하지 않았으며, 지원 프로그램의 정량적 실적까지 공개하고 있는 기업은 매우 제한적임
- 그중 Apple은 매년 공급망 점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누적 참여 인원(580만 명), 설비 안전훈련 참여 사업장(800개 이상) 등의 성과를 매년 정량 지표로 공개하고 있어 협력사 지원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음<sup>7)</sup>

6) Unilever, 2023, "Responsible Partner Policy Audit Update 2023", <https://www.unilever.com/sustainability/respect-human-rights/human-rights-in-our-value-chain/>

7) Apple, 2025, "People and Environment in Our Supply Chain", <https://www.supplychainreports.apple/home/default.aspx>

〈그림 3〉 Apple의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체계 공개 사례



출처 : Apple, People and Environment in Our Supply Chain 2025

- 향후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논의 등을 고려하여 국내 기업 또한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공급망 안전보건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AI 기반 ESG 인식 분석 : 환경보호·사회공헌 중심 오해의 현황과 함의

양희원\*

- ▶ ESG가 단순 환경보호 또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음
  - ▶ 그러나 ESG의 본질은 이해관계자 간 이익·손해를 조율하여 외부경제효과를 재무적으로 내부화하는 자본주의적 조정 장치라는 점임
  - ▶ 본 보고서는 AI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ESG에 대한 대중적 인식 현황을 검토하고, ESG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 \* 뉴스 키워드 데이터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기사 데이터 포털인 빅카인즈<sup>1)</sup>에서 추출

### 서론 : ESG는 단순 환경보호·사회공헌 활동인가?

- ESG는 단순 환경보호 또는 사회공헌 활동이 아님
  - ESG가 단순히 '환경보호'나 '사회공헌'의 확장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ESG의 핵심적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ESG의 핵심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재무적으로 내부화(Internalizing)하는 데 있음
  - 즉, ESG는 단순히 '착한 경영'이 아니라, 환경·사회적 비용을 기업의 재무적 판단 체계 안에 반영시켜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자본주의적 조정 장치에 더 가까움

〈그림 1〉 ESG = 외부비용의 내재화(Internalizing Externa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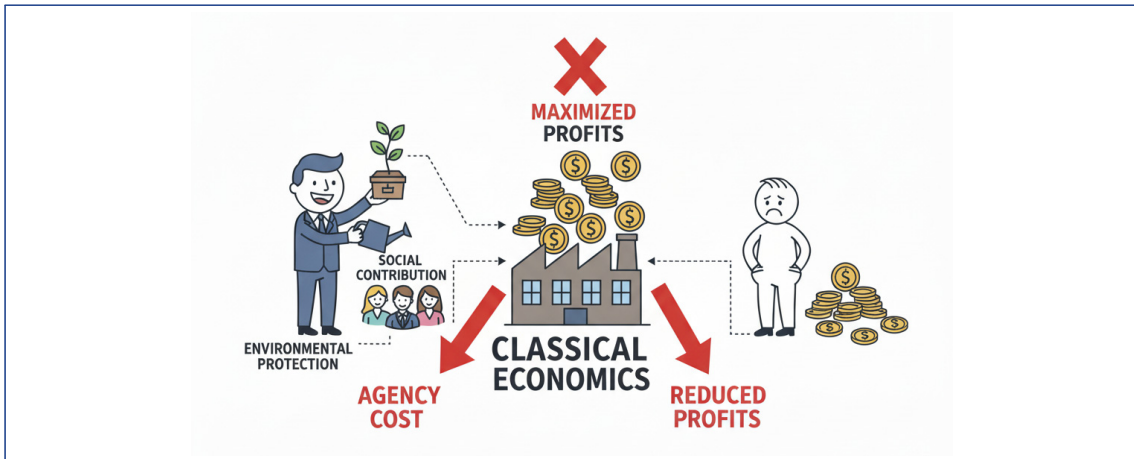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ESG평가본부 선임연구원, 미국공인회계사(State of Washington), hwyang@cgs.or.kr  
1) <https://www.bigkinds.or.kr/>

#### □ 고전주의 경제학의 관점과 한계, 그리고 ESG의 부상

- 고전주의 경제학은 완전경쟁시장(Perfect Competition) 하에서 각 기업이 자신의 재무적 이익을 극대화하면 사회 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된다고 전제함
- 이러한 관점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이나 환경보호 활동은 오히려 이윤 극대화를 저해하는 비효율적 행위(대리인 비용; Agency Cost)로 인식됨
- 그러나 실제 경제 환경에서는 외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윤 추구만으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이 반드시 증가하지 않음
- 이에 따라, 기업의 재무적 판단에 외부효과를 반영(내부화)해야 사회적 후생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ESG의 필요성이 부각됨

〈그림 2〉 고전주의 경제학 : 사회공헌이나 환경보호를 Agency Cost로 인식



#### □ ESG의 개념 왜곡과 현황 연구의 필요성

- 현재 대중과 언론에서는 ESG를 환경보호 또는 사회공헌 활동의 확장 개념으로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인식은 ESG의 본질적 의미인 외부효과의 재무적 내부화를 배제한 채, ‘착한 이미지 소비형 ESG’로 변질시키는 문제를 초래함
- 따라서, ESG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① 고전경제학과 외부효과 개념의 한계를 파악하고, ② 기업의 환경·사회 이슈 대응 비용이 어떻게 재무적으로 내부화되는지 볼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는 본문 1에서 ESG의 경제학적 설명 기반과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설명하고, 본문 2에서 AI 기반 기사 분석을 통해 ESG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왜곡 현황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본론 1 : ESG와 외부효과의 재무적 내부화

### □ 대리인 비용 - 고전주의 경제학과 환경보호·사회공헌

- 고전주의 경제학은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각 기업이 자신의 재무적 이익을 극대화하면 사회 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된다고 봄
- 대표적인 예로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1970년 The New York Times 기고문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함 (일명 프리드먼 독트린)
- 프리드먼의 논리에 따르면, 환경보호나 사회공헌 활동은 이윤을 감소시키는 비용 요인으로 간주됨
- 즉,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경영자(대리인)가 환경보호나 사회공헌 활동을 자의적으로 수행하면, 이는 대리인 비용(Agency Cost) 발생으로 이어짐. 따라서,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기보다 오히려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예시: 은행이 사회공헌 목적으로 채무자 탕감을 시행  
→ 이자수의 감소 → 배당 축소 → 주주 손해 → 사회 후생 감소

〈도식 1〉 환경보호나 사회공헌 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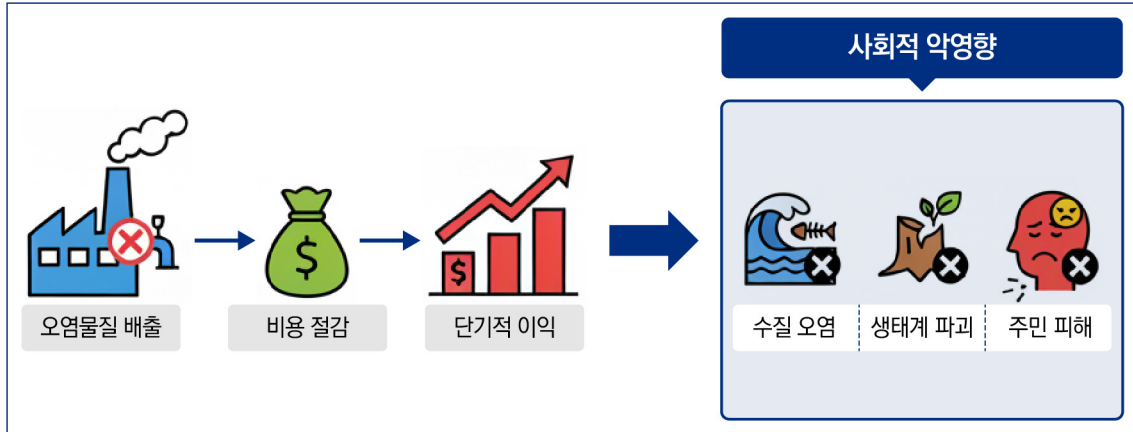


- 요약하면, 고전경제학 관점에서 E·S 활동은 재무적 관점의 비효율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세간에서 인식하는 ESG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 외부효과 - 이윤 추구만으로 사회 전체의 후생은 정말 증가하는가?

-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이 단순히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도 사회 전체의 후생이 반드시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남
- 그 이유는 외부효과(Externalities)임
- 예시: 공장이 비용 절감을 위해 오염물질을 정화 없이 방류할 경우  
→ 기업은 단기적으로 이익  
→ 사회는 수질 오염·생태계 파괴·주민 건강 악화 등의 피해

〈도식 2〉 단순 이윤 극대화 추구시 발생할 수 있는 외부효과(Externa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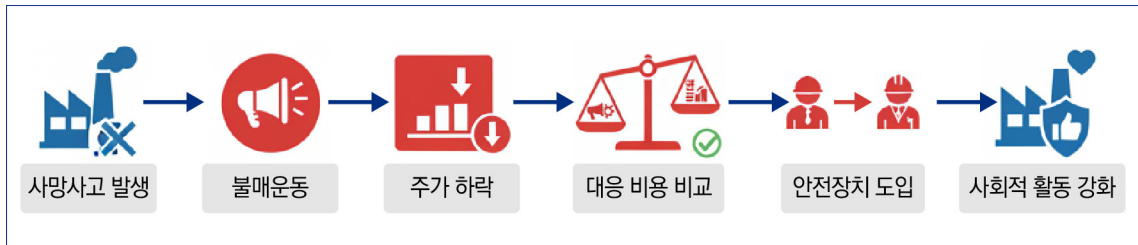


- Jensen(2001) 「Value Maximization, Stakeholder Theory, and the Corporate Objective Function」에 따르면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환경에서는 기업가치 극대화가 곧 사회 후생 극대화로 이어짐. 그러나 실제 경제에는 외부효과가 존재하므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한 ‘계몽된 가치 극대화(Enlightened Value Maximization)’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기업은 이러한 외부효과에 대해 재무적으로 직접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 이익의 극대화가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로 이어지지 않음
  - 요약하면, 외부효과의 존재로 인해 ‘이윤 극대화 = 사회 후생 극대화’라는 고전경제학의 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되었음
- **법과 규제 - 외부효과 내부화의 불안정한 해결책**
- 외부효과를 줄이는 근본적 방법은 외부효과를 기업의 내부 비용으로 전환(내부화)하는 것임
  - 가장 단순한 수단은 법·규제의 개입임
  - 예시: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
  - 그러나 법과 규제만으로는 외부효과의 내부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음. 기업마다 산업 구조·이해관계자 관계가 상이해 일률적 규제는 미세한 조정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임. 또한,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로비·법적 회피 수단 등을 활용해 규제의 실효성을 낮추기도 함
  - 따라서, 사회 후생 극대화를 위해서는 법·규제를 보완하는 자발적인 시장 기반의 조정 메커니즘 등 부가적인 장치가 필요함
- **ESG - 외부효과 내부화의 자본주의적 장치**
- 한편, ESG는 강제적 규제 대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도록 유도하는 자본주의적 장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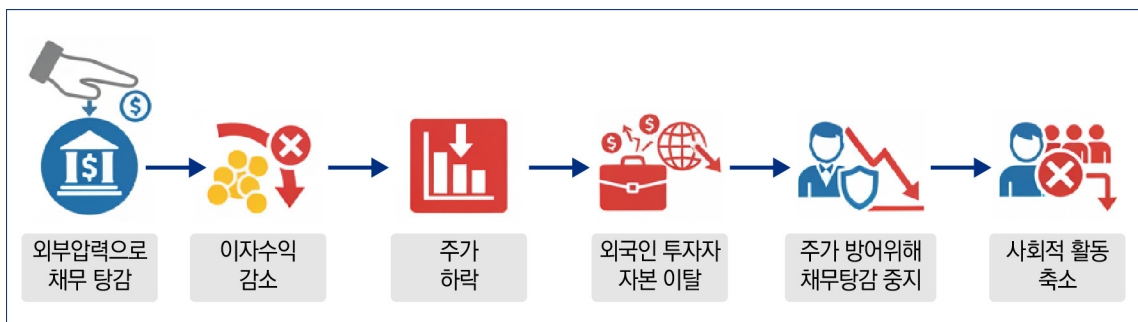
- ESG는 법·규제와 다르게 '환경보호'나 '사회공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간 이익·손해 조정의 결과물로서 작동함
- 예시 ① <사회적 활동 확대>  
 : 식품기업에서 사망사고 발생  
 → 사회단체 불매운동 → 주가 하락 → 주가 하락 손실보다 안전 투자비용이 적음  
 → 경영자는 주가 방어를 위해 안전 장치 도입 → 사회적 활동 강화

<도식 3> 사회적 활동 확대 케이스



- 예시 ② <사회적 활동 축소>  
 : 은행에서 외부압력으로 대규모 채무 탕감  
 → 이자수익 감소 → 주가하락 → 외국인 투자자 자본 이탈  
 → 경영자는 주가 방어를 위해 채무 탕감 중지 → 사회적 활동 축소

<도식 4> 사회적 활동 축소 케이스



- 이처럼 ESG는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 조정 메커니즘이며, 방향성(좋다/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임
- 결과적으로 ESG는 외부효과를 시장 내에서 재무적으로 내부화하도록 유도하며, 사회 전체의 후생을 장기적으로 극대화하는 자본주의적 조정장치로 기능함

## 본론 2: ESG에 대한 환경보호·사회공헌 중심 오해 현황 AI 분석

### □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기사 데이터 AI 분석

- 분석 대상 :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에서 추출한 기사 키워드 데이터 (검색어: ESG)
- 분석 방법

구분	내용	비고
대상기간	2025년 3분기 (2025.07.01. ~ 09.30.)	최대 다운로드 가능 데이터 2만건과 분석 투입 AI 토큰 한도 고려하여 가장 최근 분기로 범위 설정
분량	분석 기간 내 기사 15,529건	-
AI 활용	구글 Gemini  프롬프트 ① (여부 판단) =AI("다음 키워드를 보고, 기업의 환경/사회 이슈 관련 활동이 직접적으로 비용 절감이나 수익 증대 등 재무적 영향과 연결되는 경우 'Yes', 단순히 환경보호나 사회공헌 활동으로만 언급되는 경우 'No'로만 분류하여 출력해주세요. 키워드: " & Bxxxxx)  프롬프트 ② (근거 판단) =AI("다음 키워드를 보고, 기업의 환경/사회 이슈 관련 활동이 비용/수익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이 있다면 그 이유를 50자 이내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단순히 환경보호나 사회공헌 활동이라면 '해당 없음'이라고 출력해주세요. 키워드: " & Bxxxxx)	구글스프레드 시트의 AI함수 활용하여 아래 프롬프트 두 개 모두 재무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보수적으로 "No"로 판별

분석 원본 링크 : [클릭](#)하면 이동

A	B	C	D	E
1	뉴스 식별자	키워드	외부효과 재무적 고려 여부	프롬프트 1
2	02100861 20250930121911001	임직원, 현대산업개발, 지역사회, 유공자, 관계자, 사회공헌	No	프롬프트 2
3	01700101 20250930145230001	제주도, 이나스프리, 기업참여, 제주, 이시스자산운용, 사리	No	해당 없음
4	01402008 20250930232040001	임차리, 부산시, 부산, 위업자, 상용근로자, 지자체, 중가세, Yes	Yes	해당 없음
5	01600601 20250930223428001	봉사활동, 환경, 소외계층, 지사장, 부승총합사회복지관, 진	No	해당 없음
6	01600601 20250930223334007	지역사회, 청소년교육지원센터, 위문품, 지원팀, 아동센터, 일반	No	해당 없음
7	04102008 20250930222409001	esg, 해진공, 해운사, 영고, 경영력, 해운업계, 안병길, bfc, Yes	Yes	ESG 활동으로 핵심업계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유치에 긍정적 영향
8	01400351 20250930220604002	임차리, 부산, 노동자, 부산시, 우수사업, 임차리대상, 취약가 Yes	Yes	취약계층 고용 및 일자리 창출로 기업 이미지 개선 및 정부 인센티브 획득 가능
9	01400351 20250930220531001	봉선포, 국립공원공단, 해양쓰레기, 반려해변, 태안지사, ee	No	해당 없음
10	01400351 20250930220345002	esg, 성남, 성남시, 단천, 신상진, 특별시, zero, 성남아트센터	No	해당 없음
11	01400351 20250930220311002	육주해, 나사렛대학교, 임무협약, 장애인, 간담회, esg, 나사	No	해당 없음
12	01400351 20250930220210001	신익재수지, re100, 혁신을, 설명회, 진천, 환경의식, 진운우 Yes	Yes	RE100 및 ESS 도입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기업 이미지 향상
13	01501301 20250930203309001	삼두종합기술, 지역사회, 장애인, 봉사자, 복지사, 최영수, 울	No	해당 없음
14	01501301 20250930203301002	식약공사, 전통시장, 울산, 한국적유공자, 활성화, 장바구니	No	해당 없음
15	01200201 20250930203054001	메가이비씨, 메가리뷰, 미세조류, 클러스터, 정화기, 이은진 Yes	Yes	미세조류 정화기 및 거래제 관련 사업은 신규 시장 창출 및 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6	01500101 2025093020194200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00만, esg, 사회공헌사업, 청소년 Yes	Yes	해당 없음
17	04100608 2025093020025001	county, renewable environmental, sustainable, reside Yes	No	해당 없음
18	04102008 20250930191209001	동반성장, 협력사, esg, 관계자, 현대로템, 독일, dn술부선? Yes	Yes	RE100, ESS 등 재생에너지 활용은 초기 비용 발생하나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수익 창출에 기여.
19	02100351 20250930185304001	에그테크코리아, 단박질, 가공품, 한국가공협회, 위평희, 풀	No	ESG 경영을 통한 협력사 동반성장은 기업 가치 및 평판 향상, 공급망 안정화로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20	01400701 20250930184645001	세종, 이상기업, 세종시, 지역업체,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	No	해당 없음
21	02100501 20250930182942001	부산, 태산공약재단, 수상자, 복지사, 경남, 시상식, 특별상, No	No	해당 없음
22	01500701 20250930182758002	임차리, 부산시, 우수사업, 100만, 상용근로자, 지자체, 우수 Yes	Yes	패블라스트 재활용 신산으로 비용 절감 및 신규 시장 창출 가능성이 있음.
23	04104008 20250930180950001	esg, 특별시, 성남, 단천, 성남시, 신상진, zero, 안진영, 어린 No	No	해당 없음
24	04100078 20250930180900001	한신영력, 현종원, 봉사단, 한신, 국회사물현종원, 임직원, Z	No	해당 없음
25	02100311 20250930180205001	kb, 양종희, 협의회, kb금융, 가계금융, 손이영, 상반기, 국민 No	No	해당 없음
26	02100101 20250930175507002	편입국, 독자국, 주간국, 관리부, 편집부, 광고국, 제작국, 디: No	No	해당 없음
27	02100701 20250930175147001	음주운전,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기업, 박희수, 경각심, No	No	해당 없음
28	04102008 20250930175045001	유계수, 안축도, 배달파트너, 간편식, 한도, 한솔제지, 겨울중 No	No	해당 없음
29	04100078 20250930174947001	티웨이항공, 부산, 항공권, 인천, 독일, 수상자, 근로자, 프랑 No	No	해당 없음
30	02100601 20250930173928001	esg, 성남, 손해물, 특별시, 성남아트센터, 단천, 성남시, 안? No	No	해당 없음
31	02100201 20250930173918001	한이연, 본부장, 경영력, 경영진, 김기연, 한반도미래연구원 No	No	해당 없음

2)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3qA2rzAFe8W2kCxLFriVtP2m-Cm2b91Aw5auORZF6-4/edit?usp=sharing>

○ 분석 결과

: AI 분석 결과 할루시네이션을 가정하더라도 상당수의 기사가 재무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ESG를 단순 환경보호 또는 사회공헌으로 기술하는 경향 존재

- 1) 재무적 영향력을 고려한 것으로 AI가 판단(“Yes”)한 비중은 8,092건으로 전체 표본 15,529건 중 52.11%를 차지함
  - 2) 재무적 영향력 고려 없이 단순 환경보호나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술한 것으로 AI가 판단(“No”)한 비중은 7,437건으로 오류 제외 표본 15,529건 중 47.89%를 차지
  - 3)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했을 확률을 고려할 경우에도 유의미한 수준의 No 비중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Wilson 분석에 따르면 AI의 분석 결과의 80%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더라도 95%의 확률로 100건의 기사 중 약 6~15건의 기사가 ESG라는 용어를 재무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됨
- 할루시네이션 50%로 가정할 경우 95%의 확률로 100건 중 약 17~33건

〈표 1〉 AI 할루시네이션 영향 - Wilson 95% CI 분석

Inputs					
Observed AI No proportion (%)			47.89%		
Total sample size (n)			15,529		
z for 95% CI			1.959963985		
Assumed hallucination rate (%)	Estimated true No (%)	Wilson 95% Lower (%)	Wilson 95% Upper (%)	Margin of Error (±%)	Expected true No count
10	<u>43.10%</u>	33.95%	54.70%	10.37%	6,693
20	<u>38.31%</u>	29.75%	49.33%	9.79%	5,950
30	<u>33.52%</u>	25.58%	43.92%	9.17%	5,206
40	<u>28.73%</u>	21.46%	38.47%	8.51%	4,462
<u>50</u>	<u>23.95%</u>	<u>17.39%</u>	<u>32.96%</u>	7.78%	3,719
60	<u>19.16%</u>	13.40%	27.37%	6.99%	2,975
70	<u>14.37%</u>	9.52%	21.68%	6.08%	2,231
<u>80</u>	<u>9.58%</u>	<u>5.79%</u>	<u>15.83%</u>	5.02%	1,487
90	<u>4.79%</u>	2.37%	9.68%	3.66%	744

○ 분석 한계

: 특정 기사의 내용이 재무적 영향을 고려했는지 여부는 주관에 따라 판별 기준이 다를 수 있음. 한편, 본 분석에서는 사람의 주관을 배제하고 일관되게 Gemini의 판별기준을 사용함. 따라서 개별 기사에 대한 판별은 주관에 따라 Gemini의 판별 결과와 다를 수 있음. 이런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 프롬프트 결과물 중 일부라도 Yes일 경우 보수적으로 재무적 영향력을 고려한 것으로 판별함. 또한, 최종 결과물의 No 비중은 95% 신뢰수준 Wilson 분석 기준에 따라 할루시네이션 확률을 10~90%로 나누어 가정하여 해석함

## 결론 : ESG 인식 재정립 필요

- ESG를 단순히 환경보호 또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은 본질적 오해
- ESG의 핵심은 외부경제효과를 재무적으로 내부화하여 이해관계자 간 이익·손해를 조정하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
- 법과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외부효과의 시장 내 조정장치로서 ESG의 경제적 의미 존재
- 그러나 사회 전반에서는 여전히 ESG를 환경보호, 사회공헌 등 '착한 이미지' 중심 개념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존재
- AI 기반 인식 분석 결과, 이러한 왜곡된 인식이 다수의 담론 속에서 확인
- 향후 ESG 논의는 단순 환경·사회 이미지에서 벗어나, 외부경제효과의 재무적 내부화라는 통합 개념으로 재정립될 필요

# 국내 금융회사 이사회의 연차 구성 현황

김수연\*

- ▶ 이사회의 연차 균형은 이사회의 독립성, 효율성 및 의사결정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 ▶ 국내 금융지주 및 은행 이사회는 특정 연차의 편중 또는 공백이 발생하는 연차 불균형 현상을 보임
- ▶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은 균형 잡힌 연차 분포를 체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프로세스임
- ▶ 이사회 구성 시 연차 균형을 통한 이사 간 상호보완적 조합을 고려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는 승계계획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이 권고됨

---

## 이사회 내 연차 균형의 필요성

### □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 이사회 구성 시 개별 이사의 역량뿐만 아니라 집합으로서의 역량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이사회의 집합적 역량을 평가할 시 이사회 역량구성표(Board Skill Matrix)가 주로 활용됨
  - 이사회 역량구성표는 기업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역량, 전문성, 경험, 배경 등을 설정하고, 현재 이사회 내 해당 역량의 보유 여부를 보여주는 표로, 이사회의 구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의 집합적 역량에는 특정 역량, 경험, 배경, 성별 등 요소를 갖춘 이사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요소들이 다양하게, 균형적으로 갖추어졌는지 또한 중요함
  - 이사회 내 역량, 경험, 성별의 다양성과 균형은 이사회가 단일적인 집단사고(Groupthink)에 빠지지 않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전략 및 리스크를 검토하여 의사결정의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ESG평가본부 금융사지배구조 파트 김수연 연구원, sykim@cgs.or.kr

## □ 이사회 내 연차 균형의 필요성

- 이사회 내 연차(재임 기간) 구성은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독립성과 연결되며, 의사결정의 품질에 영향을 미침
- 글로벌 자산운용사 Blackrock은 이사회 평균 재임 연수를 고려하며 장기 재직 이사의 지식 및 경험과 신규 선임 이사의 신선한 관점 간 균형을 찾는다고 밝힘<sup>1)</sup>
- 저·중·고연차 이사에 기대되는 역할은 아래와 같음
  - 저연차 이사: 이사회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사회 내 전문성을 최신 상태로 보완할 수 있음. 다만 이사회 및 기업 운영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축적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함
  - 중연차 이사: 이사회 경험을 갖췄으며, 신규 선임 이사와 장기 재직 이사를 이어주고 균형을 가져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고연차 이사: 기업 및 이사회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이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함. 다만 장기 재직에 따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임기 제한에 따라 재직기간을 단·중·장기로 절대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국가별로 다름
  - 미국, 영국, 유럽 등은 이사의 임기를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영국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비상임이사(non-executive director)가 9년 이상 재임할 경우 독립성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나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간주함
  - 한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에 본 동향은 임기 제한 내에서도 이사회 내 의사결정 경험과 정보 보유의 상대적인 수준에 따라 이사의 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국내 금융회사 이사회의 연차 분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국내 금융지주 및 은행 이사회의 연차 구성 현황

- 본론에서는 절대적 연차 길이를 비교하기보다 이사회 내 저연차·중연차·고연차 이사의 상대적 비중과 균형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분석 대상은 상장 금융사 및 지배구조법이 전부 적용되는 금융회사 중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금융지주(10사) 및 은행(15사)로 설정함

1) BlackRock(2024), "BlackRock Investment Stewardship Global Principles"

- DART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2025년 반기 보고서 내 이사회 및 임원현황을 출처로 하여 이사회 구성원 및 의장의 연차 분포를 분석함
  - 이사회 구성원의 경험 수준이 리더십의 경험 수준으로 연결됨. 의장은 이사회 운영의 핵심적 위치에 있으므로, 이사회의 연차 불균형이 리더십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의장의 연차를 함께 분석함
  
- 연차는 1년 단위로 총 6개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0년 이상 2년 미만은 저연차, 2년 이상 4년 미만은 중연차, 4년 이상 6년 미만은 고연차로 구분함
  
- **국내 금융지주 이사회의 연차 구성**
  - 금융지주 내 이사회 구성원의 연차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금융지주 10사 중 3사는 이사회 구성원의 60% 이상이 특정 연차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 전체 금융지주 10사 중 2사는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75% 이상이 저연차에 집중된 양상을 보임. 특히 A금융지주는 전체 이사회 구성원 10명 중 9명이 저연차 이사에 해당함.
    - B금융지주는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66%가 고연차에 집중된 양상을 보임
  - 전체 금융지주 10사 중 9사에서 특정 연차의 이사가 아예 없거나 현저히 적은 비율을 보이는 불균형한 연차 구성을 보임
    - 전체 금융지주 10사 중 5사는 고연차 이사를, 1사는 저연차 이사를 보유하지 않음
    - 전체 금융지주 10사 중 3사의 경우 특정 연차의 비중이 10%대에 그침
  - C금융지주는 유일하게 이사회 내 저연차, 중연차, 고연차 비율이 4:3:4로 고른 분포를 보임
  -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원의 연차 중앙값 조사를 통해 이사회 구성원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연차를 조사함. 그 결과, 이사회 구성원의 연차 중앙값이 저연차와 중연차로 대체로 양분됨을 확인함

〈표 1〉 국내 금융지주 이사회 연차 중앙값

구간	0년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기업 수	2	2	3	2	0	1

- 전체 금융지주 중 5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의 연차 중앙값이 중연차에 속함. 다만 중연차 안에서도 2년 이상 3년 미만의 연차에서 중앙값을 갖는 금융지주의 수가 근소한 차이로 우세함
- 전체 금융지주 중 4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의 연차 중앙값이 저연차에 속함. 특히 중앙값이 0년 이상 1년 미만에 속하는 A금융지주와 D금융지주는 각각 이사회 구성원의 50%와

- 60%가 1년 미만 재임한 신규 선임 이사에 해당함
- 전체 금융지주 중 1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의 연차 중앙값이 고연차에 속함. 해당 1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의 약 66%가 5년 이상 재임하여 임기 제한을 앞둔 장기 재직 이사에 해당함
  - 이사회의 연차 불균형이 이사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의 연차를 조사한 결과, 의장 연차는 주로 중연차와 고연차 구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사회 내 핵심 리더십으로서 장기 재직 이사 중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는 경향이 존재함. 그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융지주의 40%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중연차 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저연차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례도 존재함

#### □ 국내 은행 이사회의 연차 구성

- 은행 이사회의 연차 구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은행 15사 중 6사는 이사회 구성원의 60% 이상이 특정 연차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 전체 은행 15사 중 5사는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60% 이상이 저연차에 집중된 양상을 보임. 그중 4개 은행은 이사회의 70% 이상이 저연차에 집중된 구성을 보임
  - A은행은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66%가 고연차에 집중됨
- 전체 은행 15사 중 14사가 특정 연차의 이사가 아예 없거나 현저히 적은 비율을 보이는 불균형한 연차 구성을 보임
  - 전체 은행 15사 중 5사는 고연차 이사를, 1사는 중연차 이사를 아예 보유하지 않음
  - 전체 은행 15사 중 7사는 특정 연차의 비중이 10%대에 그침
- 전체 은행 15사 중 이사회 내 저연차, 중연차, 고연차 이사가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는 안정적인 균형을 갖춘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 은행 이사회의 연차 중앙값을 조사한 결과, 이사회의 연차 중앙값이 저연차에 집중됨을 확인함. 이를 통해 이사회 구성원이 저연차에 편중됨을 유추할 수 있음

〈표 2〉 국내 은행 이사회 연차 중앙값

구간	0년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기업 수	2	7	5	0	1	0

- 전체 은행 15사 중 9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의 연차 중앙값이 저연차에 속함. 특히 연차 중앙값이 0년 이상 1년 미만에 속하는 B은행과 C은행은 이사회 구성원의 75%가 저연차 이사에 해당함

- 전체 은행 15사 중 5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의 연차 중앙값이 중연차에 속함. 다만 해당 5사 중 4사의 경우 중연차에 해당하는 이사가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50% 이상에 이르러, 이러한 특성은 중연차 중심의 이사회 구성에서 비롯됨
- 전체 은행 15사 중 1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의 연차 중앙값이 고연차에 속함. 해당 1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이 5명으로 비교적 소규모이며, 이사회 내 구성원의 60%인 3명이 고연차에 분포하는 구성에서 기인함
- 국내 은행 이사회 의장의 연차를 조사한 결과, 중연차와 고연차에 집중됨
  - 중연차 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경우 또한 전체 은행의 40%로 고연차와 근소한 차이만을 보임

### 이사회 승계계획 기반의 이사회 내 균형적 연차 구성 필요성

#### □ 국내 금융회사 이사회의 연차 구성에 따른 지배구조 시사점

- 국내 금융지주 및 은행 이사회는 특정 연차의 이사 비중이 높거나 특정 연차의 이사가 부재하는 등 불균형한 분포를 보임
- 연차의 불균형은 임기 제한, 대표이사 교체 주기, 외부 요인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지만, 이사회 승계계획의 부재 속에서 단기적 관점의 교체가 반복될 때도 발생할 수 있음.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의사결정 역량의 약화나 운영 단절로 이어질 수 있음
- 불균형한 분포 내에서도 금융지주와 은행 이사회 모두 저연차 이사 위주의 구성을 보이며, 고연차 이사가 부재한 사례도 다수임. 이러한 구성은 이사회 경험 전달이 제한되어 장기적 시각에서의 정책적 일관성, 전략적 연속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
- 연차 중앙값 비교 시 은행 이사회가 더 뚜렷한 저연차 집중 현상을 보임
- 금융지주와 은행 이사회의 저연차 집중도 차이는 중장기적 전략 수립에 중심을 두는 지주 이사회와 즉각적인 실행 및 대응이 요구되는 은행 이사회의 차이, 은행장 교체 주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
- 금융지주와 은행 이사회의 저연차 집중도로 인하여 이사회 내에서 축적된 경험이 필요한 이사회 의장 또한 낮은 연차에서 적지 않은 분포를 보임. 이사회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사회 내 리더십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 □ 이사회 승계계획에 기반한 이사회 내 연차 균형

- 이사회가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적인 연차 분포를 고려한 승계계획을 설계한다면 임기 제한 내에서도 이사회의 독립성, 효율성 및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이사회 승계계획이란 회사의 전략적 목표 실현을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 및 교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함
- 이사회 승계계획은 단기적 교체를 반복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저연차·중연차·고연차의 균형 있는 분포를 유지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임
- 이사회 승계계획에 기반한 이사회 구성 시 장기 재임을 통한 경험 축적과 신규 선임을 통한 신선한 관점의 순환이 가능함
-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 시 역량구성표를 활용하여 이사회의 연차 분포를 분석한 후, 회사의 전략 달성에 최적화된 저연차, 중연차, 고연차 이사의 목표 비율을 설정하여야 함
- 단·중·장기 관점의 승계계획을 마련하여, 연차별 이사의 비중 변화를 점검하고, 특정 연차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해야 함

#### □ 해외 금융회사의 연차 구성 관리 사례

- 미국 JP Morgan은 이사 선임 시 이사회의 역량, 경험, 개인 특성 및 임기의 균형을 추구한다고 밝혔으며, 자체적으로 구별한 임기 구간에서 균형적인 분포를 보임<sup>2)</sup>

〈그림 1〉 JP Morgan 이사회 구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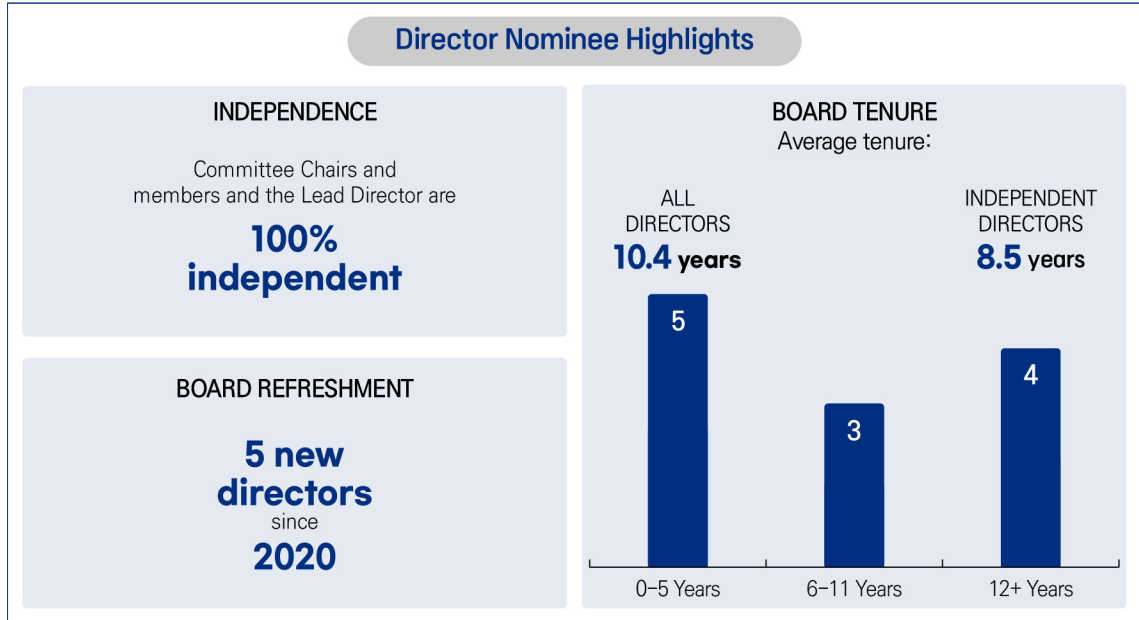
출처: JP Morgan Proxy Statement 2025

- 미국 Capital One은 이사회의 전반적인 구성과 교체 시 임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사를 구성하고자 하며, 계획된 퇴임 및 이사 이직 시점을 고려하여, 신규 이사의 선임 시기와 연계된 이사회 구성 변화에 대해 계획적인 접근방식을 취한다고 밝힘<sup>3)</sup>

2)JP Morgan(2025), "Proxy Statement 2025"

3)Capital One(2025), "2025 Proxy Statement"

〈그림 2〉 Capital One 이사회 구성표



출처: Capital One 2025 Proxy Statement

- 이러한 해외 사례는 이사회 승계계획이 연차 균형 확보에서 더 나아가 이사회 역량 및 지속성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도 활용됨을 보여줌
- 국내 금융회사 역시 이사회 구성 시 연차의 균형적 분포와 이사 간 상호보완적 조합을 고려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는 승계계획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이 권고됨

---

---

# Global News

## 1. 영국, ESG 등급 제공자 규제안 발표

정선아\*

- 2025년 10월 27일,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ESG 평가 제공행위를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이하 FSMA 2000) 내 신규 '규제활동(regulated activity)' 범주에 포함하는 입법안을 영국 의회에 상정함<sup>1)</sup>
- 본 입법안은 ESG 등급 제공행위를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인가·감독 체계 하에 편입되도록 하여, ▲ESG 등급의 신뢰성 및 품질 제고, ▲평가 과정의 투명성 및 거버넌스 개선, ▲투자자 신뢰 확보 및 시장 무결성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함
  
- 본 제도는 영국 기업뿐 아니라 해외 평가사가 영국 내 이용자에게 등급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역외적 규제 방식(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을 채택하고 있으며, 2028년 6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최종 제출안의 주요 조정사항**
- 영국 재무부가 발표한 최종 제출 초안은 의견 수렴단계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규제 적용범위의 명확화, ▲해외 제공자에 대한 규제 방식의 보완, ▲ESG 데이터 제공과 등급 제공 간의 구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보다 명확하게 조정되었음
  
- ❶ 해외 제공자에 대한 규제방식 개선
- 기존 제안 단계에서는 해외 제공자가 영국 이용자에게 ESG 등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FCA 인가 의무 부과를 전제로 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현행안에서는 적용 요건 및 예외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되었음
  - ESG 등급이 영국에 위치한 이용자에게 제공되거나, 해당 등급이 그러한 이용자에게 제공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ESG 등급 제공행위를 규제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며,
  - 해외 제공자의 경우 영국에 위치한 이용자에게 ESG 등급을 제공하더라도 어떠한 보수 (remuneration)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마련되어 있음

---

\* 한국ESG기준원 ESG평가본부 연구원, sac@cgs.or.kr

1) HM Treasury,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Regulated Activities) (ESG Ratings) Order 2025, legislation.gov.uk, 2025., <https://www.legislation.gov.uk/ukdsi/2025/9780348275995>

② 면제조항 확대

- 최종안은 ESG 관련 분석행위 중 규제 목적과 무관한 활동을 명확히 제외함으로써 규제 대상을 구체화하였음
  - 신용평가 또는 투자연구 내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ESG 요소
  - MiFID 부수서비스(ancillary services)<sup>2)</sup>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ESG 분석
  - 기업 내부 의사결정·리스크 관리용 내부용(in-house) ESG 점수 등

③ ESG 등급(Rating) 정의의 명확화

- ESG 등급(ESG rating)은 ‘하나 이상의 ESG 요인(ESG factor)에 대한 평가(assessment)’로서, (a) 의견(opinion), 점수(score) 또는 이 둘의 조합 형태로 산출되며, (b) ‘정립된 방법론(established methodology)’과 ‘정의된 등급체계(defined ranking system of rating categories)’에 기반하여 작성되는 결과물임을 정의하였음
  - 또한 ESG 등급 제공(provision)은 등급을 직접 생산하고 제공·공개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이를 통해 “단순 데이터 제공(Data provision)”과 “등급 제공(Rating provision)”의 구분이 명확해져, 단순 ESG 데이터 사업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 유럽연합(ESMA) 규제안과의 비교

- 영국의 규제안은 EU의 ‘EU ESG Rating Regulation(Regulation (EU) 2024/3005)’과 기본 취지는 유사하나, ▲적용범위, ▲정의체계, 규제대상 설정 방식 등에서 구조적 차이를 보임<sup>3)</sup>

〈표 1〉 영국과 유럽연합의 규제안 주요 특징 비교

구분	영국(HM Treasury)	유럽연합(ESMA)
등급 정의	FSMA 2000상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ESG 등급만 규제	기업·금융상품·리스크 노출 등 광범위한 ESG 평가활동 전반 규제
감독기관 및 인가체계	FCA 인가 (Authorisation 중심)	ESMA 중심의 등록제 + 직접 감독
적용범위	내부용 등급, 신용등급/투자연구 부수적 ESG 점수, 단순 데이터 제공등은 제외	유사한 예외를 인정하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활동의 범위가 영국보다 넓은

2) MiFID 부수서비스란, FSMA 2000에 규정된 투자연구·기업분석 등 투자서비스를 보조하는 부가적 서비스를 의미함

3) ESMA, “ESMA consults on rules for ESG Rating Providers”, <https://www.esma.europa.eu/press-news/esma-news/esma-consults-rules-esg-rating-providers>

### 2. EU(유럽연합),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 합의

강혜민\*

#### □ EU, 204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합의

- 지난 11월 5일, EU 이사회는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감축하는 목표에 합의함
-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6.25~72.5% 감축하겠다는 공동 목표에도 합의하였으며, 11월 10일 브라질 벨렝에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기 전 UNFCCC<sup>1)</sup>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up>2)</sup>가 공식 제출됨

#### □ 합의안의 주요 내용

- 2040년까지 90% 감축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기존보다 완화된 타협안 채택
  - 원안은 회원국이 제3국의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확보한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s)'으로 각국의 감축 목표를 최대 3%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합의안에서는 상쇄 가능 한도를 5%로 상향함<sup>3)</sup>
  - 건물과 도로 운송에 대한 EU 배출권거래제(EU ETS2) 시행 시점을 당초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함
  - 중간 목표에 대한 진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기로 함

#### □ 합의 배경 및 주요 쟁점

- 2019년,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sup>4)</sup>을 발표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함
- 2021년,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제정하여 2030년 감축 목표를 법적으로 규정함
- 지난 7월,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로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감축한다는 골자의 기후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음
- 경기 둔화와 산업계 반발 등의 이유로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컸으며, 수개월에 걸친 논쟁 끝에 이번 합의가 이루어짐
  - 일부 국가는 90% 감축안을 강하게 지지했으나, 보다 완화된 목표를 요구하는 국가도

---

\* 한국ESG기준원 ESG평가본부 연구원, hmkang@cgs.or.kr

1)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후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국제적 약속

3) 탄소 감축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는 '우회 감축'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함

4) 기후 및 환경 관련 정책 패키지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있었으며, 국제 탄소 크레딧과 같은 유연성 조치를 전제로 90% 감축 목표에 조건부 지지를 표명하는 국가도 있었음

- 환경단체와 기후 과학자들은 국제 탄소 크레딧을 최대 3%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에 크게 반발함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수립 현황**

- 지난 11월 11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최종 확정됨. 2035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7억 4230만tCO<sub>2</sub>eq)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함
- ‘53%’는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경우 2035년 목표에 해당하며, ‘61%’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수준임
-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올해 안으로 2035 NDC를 공식 제출할 예정임

〈표 1〉 주요 국가별 2035 NDC<sup>5)</sup>

한국	유럽연합(EU)	영국	중국	일본	미국
2018년 대비 53~61% 감축	1990년 대비 66.25~72.5% 감축	1990년 대비 81% 감축	정점 <sup>6)</sup> 대비 7~10% 감축	2013년 대비 60% 감축	2005년 대비 61~66% 감축

□ **EU 2040년 감축 목표 합의의 의미와 향후 절차**

- EU는 현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로 ‘Fit for 55’라는 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대한 신뢰를 강화함
-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일부 조항이 완화되기는 했으나, 2040년 90% 감축 목표의 법제화는 유럽 내 탄소중립 실현 및 글로벌 기후 리더십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유럽의회는 이사회와 대체로 일치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으며(지난 11월 13일), EU 회원국과 세부 내용에 대한 최종 협상이 완료되면 기후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임

5) 통상적으로 NDC를 설정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이었던 해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나라별로 기준 연도가 다름

6) 중국은 2030년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